

구미농업기술센터, 보조금이 눈먼 돈인가?

비정상적 보조금지출로 세금도둑이 되다.

기사입력 2018.10.14 20:43

2018년 경상북도농촌지도자대회가 지난 8월23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구미농업기술센터는 구미관내 9개 읍면동에서 420명이 참석할 것으로 계획을 입안했다.

이러한 참석인원을 근거로 1인 기준 교통비 2천600원과 식비 2만 원을 합해 2만2천6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9백4십9만2천 원의 예산을 세우고 참석인원과 상관없이 그대로 지출했다.



경북도에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석예상인원을 5천여 명으로 추정했으나 당일 행사참석인원은 1천여 명으로서 실제 예상보다 많이 적었다. 이와는 달리 개최지역이 구미라는 장점 때문에 참석률이 좋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몇 군데 농업인상담소에서 확인해보니 대부분 50%정도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어 계획대로 지출했다면 많은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만약에 실제 계획했던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었다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반납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액을 지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도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산출내역 상세내용으로 식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출과목 세부항목은 '행사 경비보상금' 항목에서 따왔다. 이것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당연히 개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전액을 대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보조금 지급규정도 어겼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일부 면부에서는 참석자들이 개인회비를 부담해 버스를 임차했다는 말을 하므로 집행과정부터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다. 관계당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닌 듯하다.

한편, 이번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출을 입안했던 담당계장은 얼마 전 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마치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고했으나 발각돼 구미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는 보조금전액을 반납하고 본인은 2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력을 가진 자가 이번 승진인사에서 과장승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 구미시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구미시기구표

안구 : 416.328원(2020. 12월말 현재)
면적 : 615.30㎡

구미시민

시장 장세용

부시장 김경곤

부시장 배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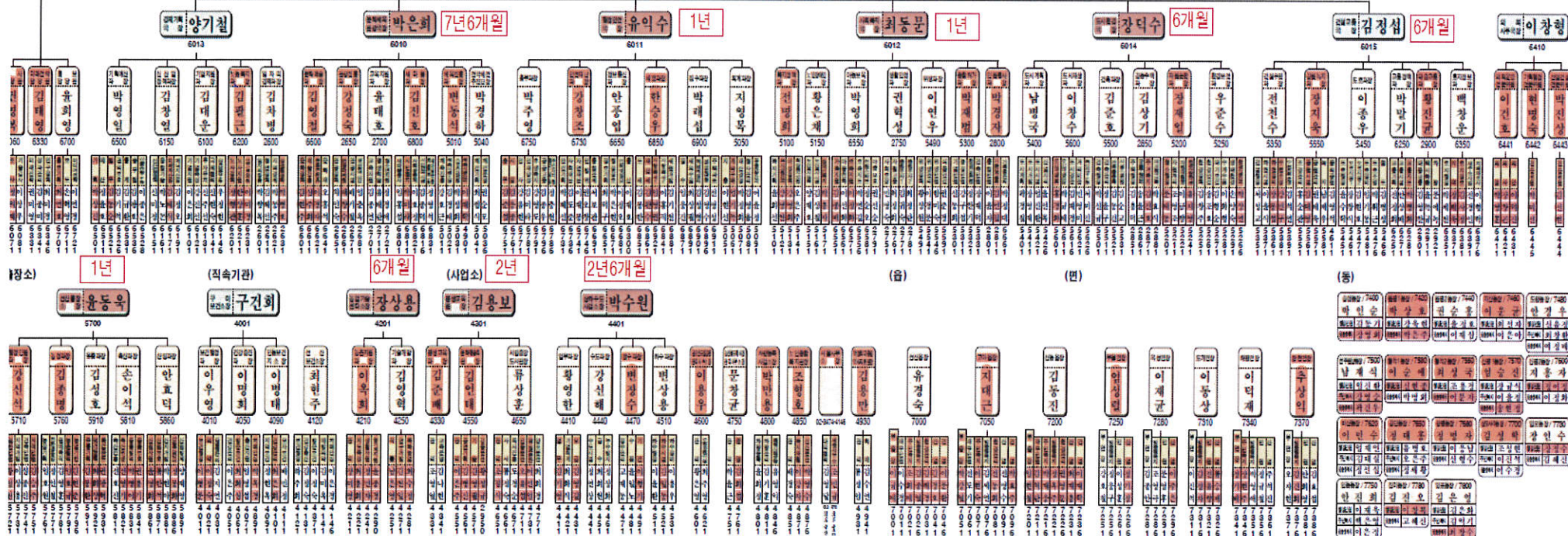
박종석 5003
이성택 5004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구분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분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분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분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분	구미	구미	구미	구미	구미

!형)

(의회)



◀ 재임기간에서 공로연수 6개월 제외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임용), 044-205-3347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_시험, 신규임용), 044-205-3348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¹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09. 9. 21., 2015. 11. 18., 2018. 3. 20., 2019. 11. 5.>

1.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 전보, 강등, 감임 또는 승진된 경우
 2. 시보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기구 개편, 직제 변경이나 정원 변경에 따라 소속·직위 또는 직급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시·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22.>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감임, 개방형 직위 등예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18.06.27.]

(제정) 1995.01.01 훈령 제18호
(일부개정) 2005.06.07 훈령 제145호
(일부개정) 2007.04.23 훈령 제 168호
(일부개정) 2012.12.31 훈령 제250호
(일부개정) 2017.09.13 훈령 제317호
(일부개정) 2018.06.27 훈령 제335호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지산자·한정
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인사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054-480-6774

제5장 보직관리

제11조(기본원칙) ①직위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업무의 성질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전문교육훈련(6개월이상)이수자 및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 해외 시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필수요원의 보직)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 실무요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한다.

- 공감 · 소통 · 신뢰 인사 -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구미시

III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III 1

인사위원회 운영

□ 운영방침

- 인사위원회 활성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도모
- 실질심의 확대를 통한 인사운영의 신뢰성 확보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 구 성

- 인 원 : 18명(임명직 8, 위촉직 10)
- 구성현황 : 부시장(위원장), 내부공무원 및 외부위원
 - ※ 의무 : 위촉위원 특정 성비 10분의 6 초과 금지, 지방의회 추천 위촉직 2인
 - ※ 제한 : 징계 등으로 인한 공무원 임용자격 결격 사유자,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

□ 회의운영

-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8명으로 구성
 - ※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지정
- 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인사위원회 기능

-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의결
-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 임용권자 요구에 따른 공무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결
-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